

##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고찰

임 정 선<sup>†</sup>

서울사이버대학교

아동 성폭력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신상공개, 전자발찌의 부착, 화학적 거세에 이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여러 법적조치들이 의도한 바대로의 효과를 현저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정이 아동 성폭력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효한지를 고찰해 보았다.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치료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써의 치료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아동 성폭력, 아동 성폭력범죄자,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아동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

---

<sup>†</sup> 교신저자 : 임정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42-7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93  
Tel : 02-944-5151, E-mail : jslim@iscu.ac.kr

아동 성폭력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의 2008년 안양에서의 두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 2009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수철 서울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2010년 김길태 부산 여중생 성범죄 살인사건 등 그 피해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으며 2000년에는 원조교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였다. 2001년 8월부터는 헌법에 위배되는 이중처벌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명예형인 신상공개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4월에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성폭력범죄자는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 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이어 2010년 6월 29일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을 억제하는 여성 호르몬 혼합물인 데포-프로베라(Depo-Provera)를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가 국회 법률안을 통과하였고 2011년 7월에 시행예정에 있다. 금년 2011년 1월 31일에는 인권위가 과잉 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형법불소급원칙을 위반해 거세 대상자의 인간의 존엄성, 나아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아동 성폭

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여러 법적조치들이 의도한 바대로의 효과를 현저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정이 아동 성폭력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도하게 엄격한 법률은 시행 상에 많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의 본보기인 미국의 메건법(Mega's Law)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방화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이웃 주민들의 항의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성범죄자가 일정한 위험지역으로 모이게 되면서 오히려 사회재적응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Holems & Holemes, 2002, 박기범, 2006 인용). 다시 말해 사회에서 고립되고 감시당하는 범죄자들은 또 다시 사회의 위험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기는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다각도에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2010, 장철영)’를 보면 예방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범위를 법률적 체제정비, 경찰체계 정비, 아동 성폭력범죄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확대 추구, 환경적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나누고 아동 성폭력과 관계가 있는 실무자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그 우선순위에 대해 설문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환경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CCTV설치 및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 범죄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소시효 배제 및 정지를 우선

순위에 둔 반면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머물렀다.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범죄보다 재범률이 10% 가량 더 높은 50%로, 성폭력범죄 전과자 2명 중 1명은 또 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행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따라서 아동성폭력범죄를 줄이는 방안은 재범률을 낮추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법제정이나 사회안전망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아직 초기상태에 머무르고 있다(허경미,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교정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정시설 내에서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위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법무부의 수감명령 부과제도가 시작되었고, 이 후 성폭력 치료수감명령도 시작되었지만 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명령자체도 적게 내려졌고, 집행에서의 예산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적었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에 개선되어서 아동성범죄자는 일부 출소기간이 허용치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100시간의 교정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는 등 일련이 치료적인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제일주의에 따라 외과적 거세까지 발의된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개입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고찰하고 아동 성폭력의 예방과 저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아동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토대

### 아동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대체로 물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축약되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까지도 성폭력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정의를 볼 수 있다(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현재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성폭행이라는 개념이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추행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비해 성폭행은 강간의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의 반항불능 또는 현저한 반항곤란을 이용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 비해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거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따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배종대, 2004, 박기범, 2006 인용).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행 모두를 지칭할 경우에는 아동 성폭력 또는 아동 성범죄라고 부를 수 있겠다(박기범, 2006).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장철영(2010)은 아동성폭력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도하는 것으로 특정한 성적행위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나체 및 성기노출,

음란물 제공, 언어적 희롱에서부터 성기접촉, 손가락 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삽입까지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WHO는 아동성폭력을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활동에 아동이 노출된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1. 아동에게 불법적인 성행위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 2.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 3.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장석현, 2009).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정의는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고 학자들마다 주장하는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서구에서는 아동 성폭력의 개념보다는 아동 성학대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동 성학대의 개념이 광범위해서 사법적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운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구에서 정의하는 아동 성학대에 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Remschmidt(1989)는 아동 성학대를 “폭력이 사용되고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Weninger(1994)는 아동 성학대를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신체접촉으로 가해자가 적어도 피해아동 보다 5세 이상 많고 압력이나 강요를 했을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압력이란 신체적 압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력까지도 의미하고 있는데 몇

몇 가해자는 은밀한 방법들을 사용하며 아동들에게 성적인 행위들이 놀이의 일부라고 속이거나 보상을 약속하기도 한다(임정선, 2010). Carlson(1994)는 아동 성학대를 “아동(일반적으로 18세 이하)과 성인의 성적인 접촉 또는 피해자보다 5세 이상인 가해자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여기서 접촉은 강간, 성교, 성기접촉, 구강 및 항문 접촉, 쓰다듬기, 성인 신체에 강제적으로 접촉하기, 성적인 행위와의 직면 또는 강요된 관찰, 실질적으로 또는 사진이나 영화로 아동을 포르노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enjamin(1988, Bruder, 1999 인용)은 아동 성학대를 “성학대를 경험한 사람의 시도로 본다. 이들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어른을 거부할 수 없는 아동에게 그 자신은 잃어버린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관계를 강요한다. 이러한 의도가 실제적으로는 아동을 학대하면서 그 자신이 찾고 있는 친밀감, 부드러움, 인정, 감탄, 사랑들을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성범죄자

흔히 성폭력을 행하는 가해자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부류에 속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학력과 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에 분포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평소에는 현실생활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주변사람들은 가해자가 남달랐던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David과 Bartschat(1999)의 연구에 의하면 기

끼이 수용되는 경험을 하고 환경과 적절하게 접촉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스스로 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거나 다른 가족이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되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적범행을 통해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경험, 감탄의 대상이 되는 경험, 친밀감을 경험하며 또한 흥분과 긴장을 탈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성적 범행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혹은 몇 안 되는 가능성이다.

성범죄자의 심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친밀감의 결여, 공감능력의 부족 그리고 인지왜곡과 같은 요소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성적 일탈행동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Marshall(1989)은 친밀감의 부족으로 생기는 정서적 외로움이 성범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정서적으로 외로운 사람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관계는 매우 피상적이며 만족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정서적인 외로움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는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서까지 성적 행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은 친밀감이 많이 부족하고 외로움을 심하게 느낀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집단이나 비교집단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감능력의 부족에서 공감이란 “다른 사람

의 정서적인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Selg, Mees & Berg, 1997) 이러한 공감능력은 어렸을 때의 엄마<sup>1)</sup>와의 애착경험과 관계가 있다. 타인과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는 엄마와의 애착 경험을 통해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최초의 경험을 하게 된다. 애착의 질을 Ainthworth는 안정애착, 불안정-양가애착, 불안정-회피애착으로 분류(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하였는데, 엄마의 적절하고 민감한 반응을 바탕으로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고 공감능력이 뛰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으며(Main, 2000)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인 연인이나 부부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한다(Bierhoff & Grau, 1999). 엄마의 부재나 상실 또는 부적합한 상호관계는 아동이 불안정애착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며 불안정애착은 정신병리와의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Brish, 199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 분석팀이 최근 검거된 연쇄 성폭행범들의 가정환경과 심리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는 모성 결핍의 경험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기범, 2006). Marshall(1989)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애착이 곧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아동기에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성인으로서 원만한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은 친밀감과도 관련이 깊다.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1) 본문에서의 엄마는 일차적 양육자를 의미한다.

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잘 못 인식하는 인지적 특성을 보인다. Deegner(1995, 임정선, 2010 인용)에 의하면 “가해자가 잘못된 해석과 왜곡을 하는 것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사고도식, 잘못된 가치 판단, 비이성적인 시각, 잘못된 가정, 임의적인 결론, 일방적인 사고습관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들로 많이 사용된다. 이들은 피해자와 상호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행동방식, 스스로의 동기 등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잘못 판단하거나 긍정적인 근거로 활용한다”.

#### 아동성범죄자

아동성폭력은 소아기호증을 가졌거나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임상심리학에서는 소아기호증을 정신장애의 일부로 분류하는데 미국정신의학회가 발간한 임상진단체계인 DSM-IV-TR(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Text Revision;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의하면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되는 자는 13세 이하의 아동이나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강력한 성적 환상과 욕구를 갖고 이런 아동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적 행동을 일삼으며 이러한 행동패턴이 되풀이되는 사람이다. 성적 욕구와 충동 뒤에는 심한 자책에 빠지고 성인 여성과의 성행동에 기능적 결함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성적 환상과 욕구 및 행동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엄격한 의미에서 소아

기호증으로 진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형적인 소아기호증자는 이성 관계에서 아동에 대한 사랑을 성인에 대한 사랑과 구별하지 않는다. 이들 소아기호증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분명하게 선호하는 성별이 있으며 아동이 성적으로 성숙하여 성인이 되면 흥미를 잃는다(Hoyndorf, 1995).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특징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고 있는데 Groth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소아기호증자를 고착된 ‘성적 학대자’와 ‘퇴행적·상황적 성적 학대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가 분류한 두 종류의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차이는 표 1과 같다(Groth, 1982, 임정선, 2010 인용).

‘고착된 성적 학대자’는 전형적인 소아기호증자로 아동과의 성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동년배나 성인과 성적인 관계 경험이 없고 지속적으로 아동 성학대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퇴행적·상황적 성적 학대자’는 보통 성인에게 성적 관심이 있으나 자신의 생활에서 갈등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학대를 한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거나 알코올 남용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Hoyndorf, 1995). ‘고착된 성적 학대자’들은 미혼으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이들은 아동과의 직접적인 성행위보다는 피해아동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통해 애정과 정서적인 교류를 갖기를 원한다(Hickey, 2006, 장석현, 2009 인용).

‘퇴행적·상황적 성적 학대자’의 경우 대부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상태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들은 고착된 성학대자

표 1. 고착된 성적 학대자와 퇴행적·상황적 성적 학대자의 비교(Deegener, 1995, 임정선, 2010 인용)

고착된 성적 학대자	퇴행적·상황적 성적 학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차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편향</li> <li>- 소아기호증적인 관심이 사춘기에 시작됨</li> <li>- 학대행동 시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으며 주관적으로 혼돈 경험이 없음</li> <li>- 지속적인 성적 흥미, 강박적인 행동</li> <li>-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범행</li> <li>- 동일시: 가해자는 피해자와 심하게 동일시하며 피해자와 같다고 생각함. 아동의 수준에 근접한 행동: 피해자에 대해 가식적인 부모역할을 하거나 할 수도 있음</li> <li>- 남자아이가 일차적인 피해자</li> <li>- 동년배와의 성적인 접촉은 아주 적거나 거의 없음: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미혼이거나 ‘목적이 있는’ 결혼생활을 함</li> <li>- 일반적으로 이전에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없음</li> <li>- 성숙하지 못한 성격: 동료집단과 사회적 성적인 관계가 아주 적거나 나쁨</li> <li>- 범행은 삶의 결과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차적으로 동년배에 대한 성적 편향</li> <li>- 소아기호증적인 관심이 성인기에 시작됨</li> <li>- 일반적으로 학대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남</li> <li>- 성적인 학대가 에피소드처럼 나타날 때가 많음</li> <li>- 처음 범행은 충동적이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님</li> <li>- 치환: 가해자는 성인과의 갈등을 아동에 연계하면서 대체함. 피해자는 성인 성인을 대체하는 가상의 성인이며 성학대가 근친상간인 상황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탈피</li> <li>- 여자아이가 일차적인 피해자</li> <li>- 아동과의 성적인 접촉을 동년배와의 아동과의 성적인 접촉을 동년배와의 성적인 접촉과 병행: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기혼임</li> <li>- 많은 경우 범행은 알코올과 관계가 있음</li> <li>- 전형적인 생활양식을 가지지만 동료집단과의 관계는 잘 발달하지 못했음</li> <li>- 범행은 특별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임</li> </ul>

들보다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하며 피해자 대 부분 모르는 아동인 경우로 나타났다(Dybe & Hebert, 1988, 장석현, 2009 인용).

Groth가 분류한 소아기호증자 중 ‘고착된 성적 학대자’의 경우 성적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비해 ‘퇴행적·상황적 성적 학대자’는 스트레스나 알코올에 노출 될 때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와 치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행동은 성인의 행동 시스템의 작동에 혼란이 생기면서 발생한다(Marshall, 1989).

성인의 행동시스템은 애착행동, 보호행동 그리고 재생산행동(성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행동범주는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작동한다. 배우자(연인)와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행동범주는 부분적으로 겹치면서 상황에 따라 애착행동과 보호행동 그리고 성행동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부적합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세 가지 행동시스템의 기능이 불확실해진다. 일반적인 경우에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애착대상을 찾고 의지하는 애착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행동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착대상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성적 행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가 스트레스 상황(애착행동이 나타나야 할 상황)에 처하고 근처에 아동이 있는 상황(돌보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상황적 조합이 부적절하게 성적 행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Rutrecht, 2002).

Marshall, Serran과 Cortoni(2000)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범죄자들이 갈등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자주 환상의 세계로 도피를 하는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들은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과 함께 갈등 상황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shall, Hamilton과 Fernandez(2001)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범죄자는 피해아동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는 공감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아동을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흥미롭다고 느끼며 아동성폭력 행위는 피해자를 위해서였다고 정당화한다(Ward, Hudson, Johnston & Marshall, 1997). 이들은 아동과 성인의 성적 관계에 대하여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Ward, Hudson, Johnston & Marshall, 1977).

####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치료

현재 한국 아동 성폭력의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성범죄에서 아동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특히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다.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

적인 처벌의 강화로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격리나 신체적인 제약으로 아동 성폭력을 감소시키기에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상 어려움이 따르며,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교정이나 교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Hoyndorf(1995)는 임상진단체계인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Tenth Edition; 국제질병분류체계) 또는 DSM-III-R(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hird Edition, Revision;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사용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진단을 시도했다. 성인 노출증자나 아동 성범죄자의 반 이상이 불안정한 성격장애자로 진단되었는데, 이들은 쉽게 위축되었고 사회적 회피가 두드러지며 가족 외에는 가까운 사람이 없었다. 성범죄자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불안정한 성격장애까지 넓은 범위의 성격장애를 나타내었다.

미국은 1990년대에 성폭력범죄자법(Sexual Violent Predator Law)을 제정하였으며 성범죄자의 교도소 복역 후 무기한 정신병원에 수용하면서 치료를 받게 하는 정신병질모델, 교도소의 가석방위원회나 치료시설의 책임자가 강제적으로 수용치료를 받게 하는 정신보건수용치료모델 또는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석방될 즈음에 상습성 등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별도의 안전시설이나 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교도소징역 후 입원명령제도 모델에 따라 성범죄자를 필수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는 국립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산하의 성범죄자관리센터(CSOM: Center for Sex Offender Management)를 설립해서



성범죄자들의 문제행동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박상진, 신준섭, 2004).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외국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인지를 변화시키고 성 충동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른 흥미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에 성범죄자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적 개입이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이론적 토대는 행동주의 이론이었다. 이후 1980년대의 인지이론을 거쳐 현재에는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하고 있다(장석현, 2009). 시행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시적인 면이 강하고 비처벌적으로 접근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당국, 교정기관 및 치료담당기관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치료와 지도 및 감독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박상진, 신준섭, 2004). 치료프로그램의 핵심적 요소들은 범죄행위의 인정, 범죄행위 관련 요인 분석, 왜곡된 인지과정의 재구성, 충동억제, 사회적 재구조화, 생활양식의 변화 및 희생자에 대한 감정이입이다(박상진, 신준섭, 2004). 특히 감정이입은 피해자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매우 강조되는 요소이다.

독일의 경우 성범죄자를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시설에서 나온 경우에도 사회치료를 반드시 받게 한다(장석현, 2009).

한국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관인 공주치료감호소가 1987년 개청하였지만 성범죄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7년부터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08년에는 아동

성폭력사범 특별교육계획에 따라 영등포교도소, 마산교도소(이상 초범자 대상), 공주교도소, 순천교도소(이상 2범 이상 대상) 등의 4개 교정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별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허경미, 2008).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2008년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치료감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성욕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만 전담치료 하는 성폭력치료재활센터를 2009년에 공주치료감호소 내에 개청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곳에 실제 수용된 아동 성범죄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2008년 12월 치료감호법 개정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성폭력치료재활센터에 수감된 성범죄자는 28명이고, 이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는 12명뿐이었다. 검찰이 기소한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535건 중 12명만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것이다(2010, 대검찰청). 같은 기간 이상행동을 보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비율 또한 낮았다. 2009년 1월 이후 검찰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범죄는 3719건이지만,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경우는 128명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중 아동에게만 성적으로 집착하는 소아기호증자이나 성도착증 등 성욕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여주, 임재현, 2009). 이를 통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치료적 개입에 관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실하게 인식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해자는 심리적인 면에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을 수 있다. 앞으로는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장기적인 면에서의 아동 성폭력 재발과 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논의

현재 한국 아동 성폭력의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전체 성범죄에서 아동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특히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 성폭력 사건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에 대처하는 바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여론형성에 따라 화학적 거세에 이어 외과적 거세까지 발의하는 등 처벌주의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현재 강화되고 있는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치료, 관리 및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더 효과

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고착된 성적 학대자’의 경우 성적 대상이 아동으로 지속적으로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벌로써 변화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감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반면에 스트레스나 알코올 등에 노출 될 때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선택하는 ‘퇴행적·상황적 성적 학대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강력한 처벌로 규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들의 심리적인 특성의 이해와 이에 따른 치료 및 예방 대책이 더욱더 필요하다.

성인 노출증자나 아동 성범죄자의 반 이상이 불안정한 성격장애자로 진단되었는데, 이들은 쉽게 위축되었고 사회적 회피가 두드러지며 가족 외에는 가까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불안정한 성격장애까지 넓은 범위의 성격장애를 나타내었다.

아동 성폭력가해자들은 부모에게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고 갈등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자주 환상의 세계로 도피를 하는 것이 확인되며 갈등 상황에 비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아동과 성인의 성적 관계에 대하여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은 성폭력 행위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외국의 경우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상담 및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아동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치료프로그램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의 아동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으며 아동 성폭력과 관계가 있는 실무자 및 학자들도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을 정책적 하위순위에 두었다.

최근에 들어 아동 성폭력가해자를 치료하는 성폭력치료재활센터가 건립되고 아동 성폭력가해자에 대해서 수강명령이나 교화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치료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적용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수강명령이나 교화프로그램이 단순한 성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상담전문가에 의한 치료적인 접근으로서의 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치료개입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 아동 성폭력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도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  
회지: 사회문제, Vol. 10, 특집호, 117-146  
박기범 (2006).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8(2), 237-270  
박상진, 신진섭 (2005).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형사정책, 17(1), 313  
-336  
임정선 (2010). 애착과 성범죄와의 관계. 한국

기독교상담학회지, 19(2), 257-282  
장석현 (2009).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  
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2),  
231-258  
장철영 (2010).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AHP기법을 중심  
으로. 국가정책연구, 24(4), 93-122  
정여주, 임재현 (2009). 성폭력 가해자의 수강  
명령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가족  
복지학, 57-92  
허경미 (2008).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0(3), 45-  
77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 J.: Erlbaum.  
Bierhoff, H. W. & Grau, I. (1999). *Romantische  
Beziehungen*. Bern: Verlag Hans Huber.  
Bruder, K. J. (1999). Therapie fuer Maenner, die  
ihr(e) Kind(er) sexuell missbraucht haben. Der  
familienorientierte Ansatz von "Kind im  
Zentrum", Berlin-Konzept, Erfahrungen und  
Reflexionen. In G. Deegener(Hrsg.), *Sexuelle  
und koerperliche Gewalt. Therapie jugendlicher und  
erwachsener Taeter*(S. 121-169). Weinheim: belz  
Carlson. V. (1994). Child abuse. In V. S.  
Ramachandran(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pp.561-578). San Diego: Academic  
Press  
David, K. P. & Bartschat, M. (1999). Vertrauen  
ist gut-Kontrolle ist notwendig:  
Taetherapeuten-die freundlichen Wachhunde.  
In G. Deegener(Hrsg.), *Sexuelle und koerperliche  
Gewalt. Therapie jugendlicher und erwachsener*

- Taeter. Weinheim: Beltz
- Deegener, G. (1995). *Sexueller Missbrauch: Die Taeter*. Weinheim: Beltz
- Hoyndorf, S. (1995). *Behandlung sexueller Stoerungen. Aetiologie, Diagnostik, Therapie: sexuelle Dysfunktionenen, Missbrauch, Delinquenz*. Weinheim: Beltz
- Main M. (2000). Aktuelle Studien zur Bindung. In Gloger-Tippelt, G. (Hrsg.), *Bindung im Erwachsenenalter*, Verlag Hans Huber.
- Marshall, W. L. (1989). Intimacy, Loneliness and sexual offend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7 (5), 491-503
- Marshall, W. L., Hamilton, K. & Fernandez, Y. (2001). Empathy deficitis and cognitive distortions in child molest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 (2), 123-130
- Marshall, W. L., Serran, G. A. & Cortoni, F. A. (2000). Childhood attachments, sexual abuse, and their relationship to adult coping in child molest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 (1), 17-26
- Reschmidt, H. (1989). Epideminologie, Erscheinungsformen und begleitumstaende sexueller Kindesmisshandlung. Juristische interventio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H. Oblin, K. D. Bachmann & R. Gross(Hrsg.), *Kindesmisshandlung. Eine Orientierung fuer Aerzte, Juristen, Sozial- und Erziehungsberufe*(S. 71-76). Koeln: Deutscher Aerzte-Verlag
- Ruterecht, M. (2002) *Bindungsstile bei Sexualstraftaetern: Zusammenhang mit Aggression und Aengstlichkeit*. Frankfurt am Main: Verl. fuer Polizeiwissenschaft.
- Selg, H., Mees, U. & Berg, D. (1997). *Psychologie der Aggressivitaet*.(2. ueberarb. Aufl).
- Ward, T., Hudson, S. M. Johnston, L. & Marshall, W. L. (1977). Cognitive distortions in sex offenders: An intergr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5), 479-507
- Wenninger, K. (1994). *Langzeitfolgen sexuellen Kindesmissbrauchs: Dysfunktionale Kognitionen, psychophysiologische Reagibilitaetat und ihr Zusammenhang mit der Symptomatik*. Goettingen: Cuvillier
- 1 차원고접수 : 2011. 6. 14.  
심사통과접수 : 2011. 7. 14.  
최종원고접수 : 2011. 7. 28.

## **A Study on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Child Molesters**

**Lim, Jeong-Sun**

Seoul Cyber University

Sexual abuses against children are steadily increasing, and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public opinion for intensifying the punishment of child molesters is being formed rapidly. Punishments on child molesters include the pub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use of electronic bracelet, and chemical castration, and 'the Bill on the Surgical Treatment of Child Molesters' has been proposed. However, various legal measures that have been executed so far have failed to produce a significant effect as intended. Thus, this study determined whether the enactment of a law for intensifying punishments would be effective for solving the problem of sexual abuses against childre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 molester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reatment for offenders, and proposed intensified therapeutic programs as a part of correction and edification programs.

*Key words* : Sexual abuse against children, child molesters, punishment on child molesters, therapeutic programs for child molesters